

청약 부적격 대표사례 (특별공급)

※특별공급종류 : 기관추천(국가유공자, 장기복무제대군인,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, 중소기업장기근속자, 장애인),
 신혼부부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 특별공급
 ※특별공급종류별 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신혼부부특공 부적격 대표사례



남(세대주)

부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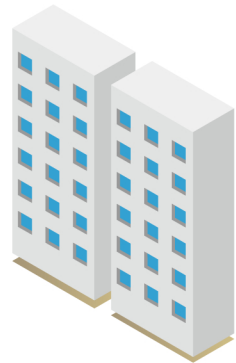


배우자(세대원)

청약신청

청약신청

동시 청약 불가
 당첨시 부적격



잠깐! 꼭 주의하세요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.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**1인만 신청 가능**하며,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**중복 청약**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, 당첨 시 **부적격당첨자**로 됩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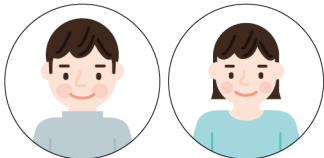
| | |
|---------|--|
| 청약자격 |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자 |
| 청약자 | 무주택세대구성원 (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시 무주택으로 간주) |
| 청약통장 요건 |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|
| 청약가능 면적 | 85㎡이하 |

생애최초특공 부적격 대표사례



미혼(未婚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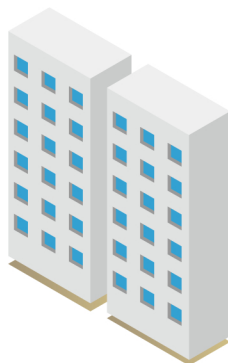
※미혼자녀 및 입양자녀가 있을경우 예외



부부
 (소득증빙 불가)

청약신청

당첨



미혼(未婚)

부적격

소득증빙 불가

잠깐! 꼭 주의하세요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3에 따라 자녀가 없는 **미혼**의 경우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,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**소득증빙이 불가**할 시 당첨되어도 **부적격당첨자**로 됩니다.

생애최초 특별공급 기본조건

| | |
|---------|---|
| 청약자격 | 과거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(세대원포함) ※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여부 포함 |
| 청약자 | 무주택세대주 |
| 청약통장 요건 |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|
| 청약가능 면적 | 85㎡이하 |

※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입니다